

2. 파주시농기계임대관한조례안

□ 제정이유

- 동 제정 조례안은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노동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작업의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코자하는 것으로
- 최근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정부의 농기계 구입지원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영세농가에서는 농기계구입이 어려워짐에 따라 내구성 있고 공동으로 이용이 가능한 대형 농기계를 농가에 임대하여 농기계 구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임

□ 주요골자

- 시에서 농기계를 구입하여 농업관련 공동이용단체에 대형·고가 농기계를 임대 (안 제3조, 제4조)
- 농기계 임대사업자는 영세농가 및 노령, 부녀화 농가에 농작업 대행을 실시토록 함 (안 제2조, 제8조)
- 농기계 임대료 및 농작업 대행 수수료 및 조례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 (제7조, 제8조, 제13조)

□ 검토의견

- 동 조례의 제정 영세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기계화 영농으로 노동생산성을 향상한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다고 보아지나
- 농기계 구입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으로 소요예산을 결정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반영되지 못한 면이 있음